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예 산 재 정 과

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

구 미 시

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가. 2027년도분 지방채 발행 ⇨ **1,500백만원**

-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: 1,500백만원

2. 제안이유

가. 국토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국고지원액(중심시가지형, 150억원)에 비례한 주택도시 보증기금을 10% 이상 활용토록 의무화

나.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신청 및 선정된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7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발행개요

□ 2027년 지방채 발행

○ 세부내역

(단위:백만원)

부서명	사 업 명	신청액	소관	비고
계	1개 부서, 신청 1건	1,500		
건축디자인과	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	1,500	산업건설위원회	

4. 주요내용

가. 지방채 발행계획

(1) 발 행 액 : 1,500,000,000원(금일십오억원)

(2) 차 입 선 : 주택도시보증공사

(3) 연　　리 : 2.2%(변동금리)

(4) 상환기간 : 7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균등분할상환(연장시 최장17년)

(5) 상환재원 : 시비

(6) 발행방법 : 증서차입채

나. 사업개요

(1)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 *※2028년까지 연장 추진중*

(2) 위　　치 : 구미시 원평동 1028-2번지 일원(250,236㎡)

(3) 총사업비 : 26,500백만원(국 15,000 도 2,500 시 7,500 지방채 1,500)

(4) 사업내용

- 거점시설 4개소 조성, 도심여가 휴게공간 조성, 상업문화 특화가로 조성
- 도심인프라 개선,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(보안등, CCTV 등)
-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, 주민·상인역량강화 교육, 문화행사 개최 등

(5) 집 행 률 : 50%(2026. 9월 기준)

다. [상상어울림플랫폼 소통] 세부사업개요

(1) 위　　치 : 구미시 원평동 1028-2번지 일원(250,236㎡)

(2) 사 업 비 : 8,520백만원(국 4,734 도 789 시 1,497 지방채 1,500)

(3) 사업규모 : 지하1층/지상5층, 연면적 1,791.8㎡

(4) 공 정 률 : 25%(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중)

	
위치도	현황사진

라.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

(1) 2021년 선정된(국토부)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15,000백만원의 10%에 해당하는 1,500백만원을 거점시설 '상상어울림플랫폼 조성비'에 활용하도록 계획

(2)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비 조달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주민·상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 구도심의 기능 보강 및 도시의 자생력 확보

마. 연도별·재원별 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재원별	합 계	기투자	금회계획	금후계획	비 고
계	26,500	24,964	1,536	-	
국 비	15,000	15,000	-	-	
도 비	2,500	2,500	-	-	
시 비	7,500	7,464	36	-	
지방채	1,500	-	1,500	-	

5. 근거법령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제1항 및 제2항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제1항

다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) 제3항 및 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

관 계 법 령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□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계획의 목표
2.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3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
3의2.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

4.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
5. 예산 집행 계획
6.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
7.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
2.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3. 건축물 개수·보수 및 정비 비용
4. 전문가 파견·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
5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6.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
7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
8.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 사전 기획비 및 운영비
9.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
10.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·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
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·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,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 지원한다.

소 관 부 서		예산재정과
입 안 자	과 장	조 민 규
	팀 장	김 원 대
	담 당 자	이 진 욱 (480-2535)